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2. 16(목) 10:00

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(MICE) 산업 육성에 관한
조례안
(문화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(MICE)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02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2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2. 6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마이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및 금천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·문화·관광산업 연계와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라.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(안 제5조)
- 마. 전문인력의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 및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23. 2. 7. ~ 2023. 2. 13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마이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마이스산업 및 사용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마이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함

3)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
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함

4)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(안 제5조)

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규정함

5) 전문인력의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 및 제7조)

6) 마이스행사 개최 지원(안 제8조)

관내 마이스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

다. 검토의견

○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관광, 문화산업 등의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.

마이스산업은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할 충분한 시장 규모가 갖고 있다고 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추진, 행정 여건, 전담 조직 등은 지자체가 사전 갖추어야 할 요건임.

- 따라서 마이스산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마이스산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금천구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사업 아이템의 발굴이 중요하다 보며, 이에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, 인프라 구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아울러 장기적으로 금천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확보, 재정투자, 전문인력 확충 등을 구상하여 미래비전과 정책 로드맵 구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서울시 자치구 및 타 지자체 마이스(MICE) 산업 조례 제정 현황

- 서울시 자치구 : 2개 자치구(강남 및 송파) 조례 제정

市 자치구	공포일자	소관부서	비 고
강 남 구	2023.01.06.	미래문화국 관광진흥과	컨벤션센터(코엑스)
송 파 구	2020.07.09.	교육문화국 관광진흥과	잠실 마이스 복합공간 (건립중)

- 서울시 자치구 외 지방자치단체 : 31개 시(군)·도 조례 제정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. 국제교류 및 협력

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

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